#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78 발의연월일: 2022. 10. 21.

발 의 자 : 윤한홍 • 권성동 • 박성중

서범수 · 서일준 · 윤주경

윤창현 • 이달곤 • 하영제

홍문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산업・신기술에 특화된 규제혁신 플랫폼의 재설계를 통한 강력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기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위원회 상정 기간, 규제 특례 부여가 거부된 신청인의 재심의 신청 권한 및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의 사정변경에 따른 규제 특례 내용・조건 등의 변경 등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등 국가표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 그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위한 기존규제의 폐지・완화 대상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 및 규제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조, 제19조의 제3, 제24조 및 제26조).

#### 법률 제 호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병역법」"을"「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복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규제 폐 지·완화 대상

제19조의3제3항 중 "관계 법률"을 "관계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을 "규제 특례 관계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가 규제 특례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을 요청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⑧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여부, 사유 및 정비 계획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법령정비 등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 제 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규제 특례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권고를 받은 위원회"를 "권고를 받은 규제 특례 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찬성"을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
	<u> </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병역법」</u> , 「통합방위법」,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예비군법」, 「민방위기본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	
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	
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 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①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	
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	
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

6. ~ 8. (생략)

<신 설>

- 9.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 ·② (생 략)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신기술</u>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 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에 규 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

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
<u>정 및</u>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

   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

   존규제 폐지・완화 대상
- 11. (현행 제9호와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	의3(신기	술 /	서비	스 •	저	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려	])	1
• (2)	(혀해과	간음	)			

3		
		<u>관계 법</u>
률(이하 "규)	제 특례	관계법률"
<u>이라 한다)</u> -		

	·		
4		규제_	특
례	관계법률		

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_\_\_\_\_

-----.

1. ~ 3. (현행과 같음)

⑤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구제 특례를 부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규제 특례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신기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에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령이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구제 특례 위원회에 상정해야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가 규제 특례 위원회에서 부경된 경우에는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

<신 설>

<신 설>

제24조(기능)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제 특례 주관기관 의 장에게 규제 특례의 내용・ 조건 등의 변경을 요청 또는 신 청할 수 있다.

- ⑧ 신기술 서비스 · 제품과 관련된 규제 법된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여부, 사유 및 정비계획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법령정비 등 신기술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2	<u>규</u>	세 특례	위원회
			권고를

<u>받은 위원회</u>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u>찬성</u>으로 의결한다.

받은 규제 특례 위원회-	
제26조(의결 정족수)	
	<u>출석으</u>
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u>의 찬성</u>	